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68
----------	------

제출연월일: 2021. 5. 31.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척 사항 중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가 제척되어, 경관관련 중복 심의(자문) 및 행정절차 이원화 등 불편함을 초래함. 또한 울산광역시 내 타 구·군 경관조례와 형평성을 맞춤.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척사항 포함
- 나. 쉬운 용어 정리 및 간결한 문장 작성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 나.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4487호, 2021. 4. 6.)
- 라. 입법예고: 2021. 4. 12. ~ 5. 3.(21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을 “공청회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홈페이지)”로 “의견에 대하여”를 “의견을”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를 “경관위원회”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청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협의체 기능)”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에 “제6장 경관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제33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1조를 제28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6조(중전의 제11조)제2호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을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이행하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중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중전의 제12조)제1호 중 “녹화 및”을 “녹화,”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중전의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경관협정의”를 각각 “경관협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을 “경관협정서 작성기준,”으로, “구청장이 따로”를 “구청장이”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중전의 제14조)제3호 중 “사항으로서”를 “사항으로써”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경관협정”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4장 경관협정”을 삽입한다.

제21조(중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 앞에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를 삽입한다.

제22조(중전의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말한다”를 “호와 같다”로 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경관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4조(중전의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경관위원회) 구청장은 경관 관련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제26조(중전의 제20조)의 제목 “(경관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26조(중전의 제20조)제3항제1호 중 “구의원”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

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위원이”를 “구청장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중전의 제21조)의 제목 “(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위원의 제척)”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의(또는 자문)이나 서면 심의(또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32조(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협의체 위원,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국내·외 성공사례 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중전의 제23조) 중 “제20조부터 제22조”를 각각 “제26조부터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을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25조제2항제2호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u>경관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u></p> <p>1. ~ 5. (생략)</p>	<p>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u>법 제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u>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u></p> <p>1. ~ 4. (생략)</p> <p>② (생략)</p> <p>③ <u>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u></p>	<p>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 <u>법 제11조-----</u> ----- ----- ----- ----- --- <u>공고해야</u>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공청회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 ----- . <u><단서 삭제></u></p>

1. ~ 3. (생략)

④ (생략)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7. (생략)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누리집(홈페이지)-----

----- 의견을 -----
----- 경관위원회-----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제8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청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5. (생략)

<신설>

<신설>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제11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
-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경관 관련 전문가
-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신 설>

<신 설>

<신 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체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삭 제>

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

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⑨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신 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서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

<삭 제>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이행하기 -----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생략)

제13조(경관협정서) ①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3. (생략)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에 포함할 사항으로서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녹화, -----

- 2.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관협정 -----
- 2. 경관협정 -----

- 3. (현행과 같음)

② ----- 경관협정서 작성기준, -----

구청장이 -----.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내용) 영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 (생략)
-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 (생략)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7. (생략)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신설>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제18조 (생략)

제6장 경관위원회

- 1. 2. (현행과 같음)

- 3. -----
----- 사항으로써 -----

제20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 영 제1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제5장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의 경관심의

제22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

----- 호와 같다.

- 1.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삭제>

<신 설>

제19조(경관위원회)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 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경관위원회의 자문 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

제6장 경관위원회

제24조(경관위원회) 구청장은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 2.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경
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 및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
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삭 제
<신 설>

제2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2.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
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

-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
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3.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자문
을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3.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구의원

2. 3. (생략)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② 위원장-----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3. (현행과 같음)

<삭제>

④ 구청장은 -----
----- 경우 -----

-----.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제21조(경관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 대상의 용역 수행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의(또는 자문)이나 서면 심의(또는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신 설>

<신 설>

제22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 운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직무관으로 한다.

제32조(지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협의체 위원,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국내·외 성공사례 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주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안건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자문이나 서면 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

⑨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⑩ 구청장은 차별화된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 대표
등에게 디자인사업의 국내·외
성공사례 견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제20조부터 제22조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 -----

----- 제26조부터 제31조-
----- 제26
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 중 <u>“경관위원회”</u> 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u>“위원회”</u> ----- ----.
---	-----------------------------

근거법규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참고자료>

[별표 1] 제목

【현 행】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개정안】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25조제2항제2호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 제척 사항 중 일부가 미 포함되어 중복심의 (자문) 및 행정절차 이원화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쉬운 용어 정리 및 간결한 문장 작성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3. 작성자

- 소 속: 건축과
- 직 급: 지방시설주사보
- 성 명: 박동규
- 연락처: (052)290-4442